

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(안)

의안번호	303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8.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 :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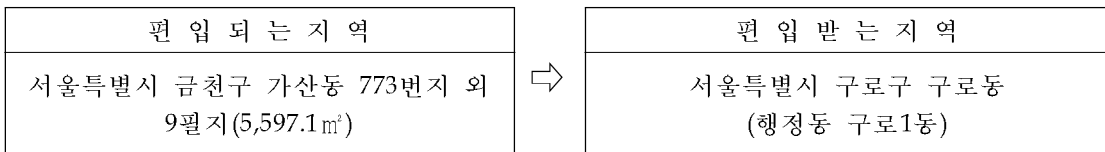
2. 제안이유

가. 자치구(금천·구로구)간 경계에 걸쳐 재건축된 한일U&I아파트와 그 주변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,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

나.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가. 대상지역



나. 경계조정 사유

- 1) 동일 생활권인 한일U&I아파트 단지가 구로·금천구간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, 교육, 재난 대처 및 치안 유지 등 행정서비스를 각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
- 2)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치구간 합리적인 경계변경이 필요함.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

- 1)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
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"지방의회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「주민투표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(관계지방의회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 제2항에서 "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"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합 의

- 1) 자치구간 협의
  - 가) '06.8월 우리시 조정권고안 통보이후 4차례에 걸친 경계조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'07.6월 경계변경안에 합의
  - 나) 경계변경안 : 대상지역을 금천구에서 구로구 구로동으로 편입하되,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등 세수는 조정완료시부터 향후 10년간 전액 금천구로 이체
- 2) 자치구의회 의견청취 결과

가) 금천구의회 : 찬성('07. 7. 4)

나) 구로구의회 : 찬성('07. 7.24)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(안)

1. 대상지역

편 입 되 는 지 역	⇨	편 입 받 는 지 역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 외 9필지(5,597.1㎡)		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(행정동 구로1동)

※ 지번 조서 및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도 별첨

2. 변경사유

- 가마산길을 경계로 금천구 가산동 일부지역이 구로구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, 동일 아파트 부지인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와 구로구 구로동 1281번지의 한일U&I아파트 8개동 가운데 1개동은 금천구에, 2개동은 경계선 상에, 5개동은 구로구 관할구역에 위치
- 2006. 6월 사용승인으로 입주이후 동일 생활권이면서도 금천구와 구로구로 나뉘어 청소, 교육, 재난 대처, 치안 유지, 반상회 개최 등 2개의 서로 다른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 초래 및 이질감 표출로 불협화음 발생
-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간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변경 필요

3. 변경규모

(2007. 7.31 현재)

구 분	지역명 ( )는 행정동	현 재			변 경			변 경 후		
		면적 (km <sup>2</sup> )	세대	인구 (명)	면적 (km <sup>2</sup> )	세대	인구 (명)	면적 (km <sup>2</sup> )	세대	인구 (명)
편입되는 지역	금천구	13.01	99,359	250,729	△ 0.01	△ 80	△ 223	13.00	99,279	250,506
	가산동 (가산동)	2.52	8,873	19,068	△ 0.01	△ 80	△ 223	2.51	8,793	18,988
편입받는 지역	구로구	20.11	162,991	421,912	0.01	80	223	20.12	163,071	422,135
	구로동 (구로1동)	1.00	7,889	23,173	0.01	80	223	1.01	7,969	23,396

4. 변경시의 장·단점

장 점	단 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혼란 방지</li> <li>◆ 행정능률의 효율성 제고</li> </ul>	없 음

5. 경계획정 수단

- 가마산길을 경계로 구로구 및 금천구의 행정구역 경계 설정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6. 지역의견

가. 행정기관 의견

구 분	편입되는 지역(금천구)	편입받는 지역(구로구)
동 장	•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구로구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	• 2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구로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구청장	• 주민들의 생활여건 및 주민편의를 위해 구로구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	상 동

나. 주민의견

○ 편입되는 지역 주민

- 사실상 구로구 생활권이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구로구로 편입 희망

○ 인근지역 주민

- 하나의 아파트단지이므로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함.

다. 당해 지방의회 의견

○ 구로구 의회

-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로구로 편입,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.

○ 금천구 의회

- 같은 아파트단지내 동일 생활권임에도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주민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

7. 종합의견

- 금천구와 구로구간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칠성아파트를 한일U&I아파트로 재건축하여 2006. 6월 사용승인 받은 지역으로
- 단지내 불합리한 경계로 인해 재건축 추진 당시부터 주민들의 진정 및 청원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
- 또한, 생활권이 동일한 같은 아파트단지 주민이지만 청소, 교육, 반사회, 치안유지 등 서로 다른 관할 행정기관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
- 구로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지 번 조 서

1. 지목별 조서

지 목 별	필지 수	지 적(m <sup>2</sup> )	비 고
계	10	5,597.1	
대 지	3	4,700.1	
하 천	1	1	
전(도로)	2	71	
도 로	3	139	
답	1	686	

2. 필지별 조서

자치구	법정동	지 번	지 목	지 적	비 고
계				5,597.1 m <sup>2</sup>	
금천구	가산동	523-17	도로	132 m <sup>2</sup>	
"	가산동	523-20	대지	6 m <sup>2</sup>	
"	가산동	524-7	전	30 m <sup>2</sup>	
"	가산동	524-10	도로	5 m <sup>2</sup>	
"	가산동	524-11	도로	2 m <sup>2</sup>	
"	가산동	524-12	전	41 m <sup>2</sup>	
"	가산동	536-1	대지	1,207 m <sup>2</sup>	
"	가산동	536-4	답	686 m <sup>2</sup>	
"	가산동	614-4	천	1 m <sup>2</sup>	
"	가산동	773	대지	3,487.1 m <sup>2</sup>	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